제23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

## 2021년도 제3회 행정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

# 검 토 보 고 서

2021. 12. 30.



##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

## 2021년도 제3회 행정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**토 보 고 서**

#### 1. 제안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2166호

나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

다. 제출일자 : 2021. 12. 22.(수)

라. 회부일자 : 2021. 12. 23.(목) / 2021. 12. 29.(수) 수정안 회부

#### 2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130조, 「지방재정법」 제45조에 따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금천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.

#### 3. 추경예산 규모

가.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(안)

(단위 : 백만원)

구		분 최종예산 당초예산 간주처리 1회추		1회추경	2회추경	3호추경(인) (명시 이월)			
	;	계		707,717	545,733	98,103	12,416	51,465	35,763
일	반	회	계	695,665	532,501	96,924	12,416	54,124	35,262
특	별	회	계	12,052	13,232	1,479	0	-2,659	500
	의료	급여기	기금	656	504	76	-	76	
	. —	소 <del>득</del> 지 안정 2		642	294	-	-	348	
	주	차	장	10,754	12,434	1,403	-	-3,083	500

<sup>※</sup> 세출규모 변동은 없음

#### 나. 명시이월

#### O 부서별 총괄 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번	부	너	명	건수	이월액	연번	부	서	명	건수	이월액
	계			50	35,762,867	10	도	로	과	2	1,824,712
1	여성기	가족	과	4	1,193,864	11	행경	성지원	일과	3	339,917
2	아동경	청년	과	3	7,883,144	12	문호	화체육	육과	2	1,205,738
3	주 틱	택	과	1	80,000	13	마을	을자치	기과	2	1,821,620
4	안전 5	도시	과	1	116,729	14	교육지원과		4	7,473,020	
5	도시기	계획	과	1	315,220	15	지으	벽경제	베과	4	2,899,365
6	건 =	축	과	1	20,678	16	도/	시재성	생과	4	4,066,311
7	공원	녹지	과	6	2,533,506	17	청 :	<b>노행</b> 경	청과	1	92,800
8	주차	관리	과	1	500,000	18	보건	건의료	로과	3	987,550
9	건설형	행정	과	1	1,084,011	19	건경	강증전	<b></b>	4	1,324,682

## ※ 최근 3년간 명시이윌 현황

(단위 : 건/천원)

구분	2018	2019	2020	2021
사업수	43	46	64	50
이월액	34,243,160	39,127,144	50,850,972	35,762,867

#### O 행정문화국 명시이월 사업현황

н л ы	all H all All mi	2021	다음연도 이월액					
부 서 명	세 부 사 업 명	예산액	계	교부세(금)	국시비보조금	구 비		
합계	: 4개 부서 / 11건	17,237,688	10,840,295	6,039,017	789,120	4,012,158		
행 정 지 원 과 (3건/339,917천원)	생활치료센터 운영	3,434,694	42,700		42,700			
	코로나19 재택치료 추진 지원	331,618	274,217	251,017	23,200			
	관용차량 운영	436,209	23,000		23,000			
문 화 체 육 과 (2건/1,205,738천원)	금천문화예술단체 커뮤니티 공간조성	450,000	325,764			325,764		
	금빛공원 야외공연장 리모델링	1,171,024	879,974	700,000		179,974		
마 을 자 치 과 (2건/1,821,620천원)	자치회관 운영	103,056	21,620		21,620			
	생활안전 CCTV 설치	1,940,000	1,800,000	1,800,000				
교 육 지 원 과 (4건/7,473,020천원)	금천 진로진학지원센터 건립	3,247,827	2,371,651	1,288,000		1,083,651		
	금천구 평생학습관 건립	4,118,000	4,112,820	2,000,000		2,112,820		
	금천형 과학관 조성·운영	924,980	281,949			281,949		
	우리동네 키움센터 설치	1,080,280	706,600		678,600	28,000		

#### 4. 검토의견

#### O 2021년 제3회 구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의

예산 최종 규모는 7,077억 17,384천원으로 당초예산 5,457억 3,330만원과 제1회 추경 124억 1,634원, 제2회 추경 514억 6,511만원, 간주처리 981억 262만원임.

금회 제출된 구 전체 명시이월액은 총 50건 357억 6,286만임.

이중 행정문화국은 11건 108억 4,029만 5천원임

## O 부서별 명시이월 사업 내역

가. 행정지원과 명시이월 : 3건 339,917천원

(단위 : 천원)

연		2021		다음연도 (	이월액		비고	
번	사 업 명	예산액	계	특 별 교부세(금)	보조금	구 비	· — (사유)	
Ē	합 계 (3건)	4,202,521	339,917	251,017	88,900	0		
							[집행시기 미도래]	
1	관용차량 운영	436,209	23,000		23,000		2021. 11월 교부금 교부	
							로 연도 내 집행 불가 [집행시기 미도래]	
	생활치료센터	0.404.004	40.700		40.700		금천구 생활치료센터	
2	운영	3,434,694	42,700		42,700		운영비로 2022.1월 중순	
							교부로 집행시기 미도래	
	코로나19						[집행시기 미도래]	
3	재택치료 추진	331,618	274,217	251,017	23,200		인건비, 차량임차료 등이	
	지원						연도 내 지출불가	

## 나. 문화체육과 명시이월 : 2건 1,205,738천원

(단위<u>: 천원)</u>

~!		2021		다음연도	비고		
연	선 사업명	예산액	계	특 별 교부세(금)	보조금	구 비	(사류)
	합 계 (2건)	1,621,024	1,205,738	700,000	0	505,738	
1	금천 문화예술단체 커뮤니티 공간조성	45().()()()	325,764			325,764	[집행 시기 미도래]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로 22. 1월중 발주예정
2	금빛공원 야외공연장 리모델링	1,171,024	879,974	700,000		179,974	[연도 내 지출 불개 금빛공원 리모델링 사 업 재검토로 사업 전반 의 추진일정 지연

### 다. 마을자치과 명시이월 : 2건 1,821,620천원

(단위 : 천원)

~!ul	11 A2 FB	2021		다음연도 (	비고			
연번	사 업 명	예산액	계	특 별 교부세(금)	보조금	구	비	(사류)
	합 계 (2건)	2,043,056	1,821,620	1,800,000	21,620		0	
1	자치회관 운영	103,056	21,620		21,620			[연도 내 지출 불개 사업비 `21. 12. 교부되 어 당해연도 내 지출 불 가(`22.1. 집행 예정)
2	생활안전 CCTV 설치	1,940,000	1,800,000	1,800,000				[연도 내 지출 불개 대상지 현장조사 및 주 민의견 청취등을 위한 운영위원회 개최 등으 로 당해연도 내 집행 불가

## 라. 교육지원과 명시이월 : 4건 7,473,020천원

(단위 : 천원)

								(611 * 66)
CH LI	шилан		2021		다음연도 (		비고	
연번		l 업 명	예산액	계	특 별 교부세(금)	보조금	구 비	(사유)
	합 겨	(4건)	9,371,087	7,473,020	3,288,000	678,600	3,506,420	
1	금천진	로진학센터 건립	3,247,827	2,371,651	1,288,000		1,083,651	[집행시기 미도래] 다년도 시업으로 현재 설계 용역 및 철거공시를 진행 중이며 `22. 5 착공예정임 -21.12.28특교교부
2	금천구	평생학습관 건립	4,118,000	4,112,820	2,000,000		2,112,820	[연도 내 지출 불가] -금천평생학습관 토지매입 협상 결렬, 설계 지연 등 으로 공사계약 등이 연기 되어 추진일정 지연 -21.12.28특교교부 ('22.1.~12.집행예정)
3	금천 조(	형 과학관 성 · 운영	924,980	281,949			281,949	[연도 내 지출 불개 `21. 12 공사계약이 마체결화 연도 내 집행 불하여 이월
4	우리동	네 키움센터 설치	1,080,280	706,600		678,600	28,000	[연도 내 지출 불개 키움센터 설계비, 공사비 등의 연도내 지출불가

#### O 검토결과

명시이월은 「지방재정법」 제7조1)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적용으로 「지방재정법」 제50조제1항2)에 따라 경비의 성질상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 세입·세출예산에 그 사유를 밝혀 미리 구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는 제도로써

행정지원국의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(안) 예산총칙 제5조(명 시이월비) 및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제출하고 구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임.

행정지원과는 관용차량운영, 생활치료센터운영, 코로나19재택치료추진 지원 총 3개 사업 339,917천원으로 사유는 집행 시기 미도래 및 연도내 지출불가 임

문화체육과는 금천문화예술단체커뮤니티공간조성, 금빛공원야외공연장리모델링 총 2개 사업 1,205,738천원으로 사유는 설계변경 및 리모델링사업 재검토 등임

마을자치과는 자치회관운영, 생활안전CCTV설치 총 2개사업 1,821,620 천원으로 사유는 보조금이 21.12월 교부되어 연도 내 지출 불가 등임

<sup>1)</sup> 제7조(회계연도 독립의 원칙) 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.

<sup>2)</sup> 제50조(세출예산의 이월)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·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교육지원과는 금천진로진학지원센터 건립, 금천구평생학습관건립, 금천형 과학관조성운영, 우리동네 키움센터 설치 총 4개사업 7,473,020천원으로 사유는 설계지연 및 공사계약 지연등 임

이상 11개 사업의 명시이월은 「지방재정법」제50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적법한 것으로 사료됨.

붙임: 관련 법령 1부.

### 붙임

## 관련 법령

#### □ 지방자치법

제130조(추가경정예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.

#### □ 지방재정법

**제7조(회계연도 독립의 원칙)** 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.

제45조(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(追加更正豫算)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

- 1.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 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
- 2.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 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·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

제50조(세출예산의 이월)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·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

- 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-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(事故移越費)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- 1.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
- 2.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 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비
- 3. 공익、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
- 4.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
-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 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.